

# 2017년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팀 연구지원사업 규정

## 제1조 (목적)

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산하의 연구팀을 대상으로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천식,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분야 의료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, 학회발전과 국민건강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.

## 제2조 (명칭)

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팀 연구지원금라 한다.

## 제3조 (연구비 지원규모)

연구 과제 당 연간 최대 2천 만원까지 지원한다.

## 제4조 (지원 연구분야)

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팀에서 신청한 연구과제를 지원한다.

## 제5조 (연구기간)

연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하되, 연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1년 간격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연구 시작일은 연구팀 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.

## 제6조 (신청자격)

- (1)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과제를 신청하는 시기에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.
- (2)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팀 연구비를 신청하는 연구자들 중에서 1명을 책임연구자로 선정한다.
- (3) 신청한 연구 과제는 타 학술 연구비 지원 기관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.
- (4) 연구과제 신청은 한 연구팀당 한 개의 연구과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7조 (심사위원회)

- (1)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팀 연구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다.
  - 연구 심사위원회는 이사장, 총무이사, 연구이사, 학술이사, 기획이사로 구성되며, 이사장이 심사위원장이 된다.
- (2) 연구이사는 연구팀 연구지원금 지원 과제를 접수 완료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심사위

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,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- (3)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2/3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(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).
- (4)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

제8조 (공모과제 신청서류) ; 10페이지 이내

- (1) 공모과제 신청서
- (2) 연구계획서
- (3) 연구실적
- (4) 기타 증빙서류
- (5)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

제9조 (연구지원금 지급 방법, 편성 기준, 및 정산)

- (1) 연구비는 연구팀 연구지원금으로 선정된 후 연구기간 동안 선 지출 후 학회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으로 처리한다.
- (2) 연구비는 인건비, 여비, 유인물비, 기술정보비, 재료비 (연구 기자재비, 시약 및 재료비, 전산 처리비), 수용비 및 수수료 등으로 구분하며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. (단, 기술 정보비는 5%를 초과할 수 없다.)
- (3)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종료된 후에 연구비 지출에 대해서 정산하고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(4) 연구팀 연구지원금은 연구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연구결과 보고서 제출의 의무)

- (1)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 보고서를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회에 제출하고, 이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받아야 한다.
- (2) 연구결과의 발표물에는 반드시 대한천식 알레르기학회 연구팀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.

(영문 : supported by grant from THE KOREAN ACADEMY OF ASTHMA,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)

- (3)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학술연구비에 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12조 (기타 사항)

기타 본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
제13조

본 규정의 개정은 연구이사의 발의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.

2017년 2월 20일